

●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-683호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8일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가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*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.

*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,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과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/h(도시가스는 232.6킬로와트)를 초과하는 것

2. 주요 내용

가. 검사대상기기 등에 ‘캐스케이드 보일러’ 포함

- 시행규칙 별표3의3(검사대상기기), 별표1(열사용기자재), 별표3의2(특정열사용기자재)에 ‘캐스케이드 보일러’ 추가

나.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검사기준 완화

- 시행규칙 별표3의5(검사유효기간)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, 별표3의6(검사면제대상)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, 시행규칙 제31조의27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)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‘캐스케이드 보일러’ 추가

3. 의견제출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) 예산·법령 -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(안)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입법예고(안)에 대한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

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

(전화: 044-203-5145, 팩스: 044-203-4759, 이메일: hik75@motie.go.kr)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589호

고속국도 사용개시

「도로법」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도로의 종류 : 고속국도
2. 노 선 명 : 제14호 함양울산선(밀양~울산)
3. 사용개시구간
 -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(함양울산선 99.51km) ~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(함양울산선 144.49km)
4. 주요 통과지 : 경상남도 밀양시, 양산시, 울산광역시 울주군
5. 전 용 구 간
 -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(함양울산선 99.51km) ~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(함양울산선 144.49km) [44.98km, 4차로 신설]
6. 중 용 구 간 : 없 음
7. 사용개시일시 : 2020. 12. 11(금) 17:00
8. 비 고 :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.
 - 첨부서류 : 위치도(5만분의 1이상)<계재생략>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590호

유료도로 통행료 수납

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도로의 종류 : 고속국도
2. 노 선 명 : 제14호 함양울산선(밀양~울산)
3. 통행료 수납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4. 주요구간 통행료

구 간(나들목)		통 행 료(원)				
		1종	2종	3종	4종	5종
배내골	서울산	1,500	1,600	1,600	1,800	2,000
배내골	통도사	1,400	1,400	1,400	1,600	1,700

5. 시설물의 명칭 : 배내골영업소
6. 통행료 수납구간
 -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(함양울산선 99.51km) ~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(함양울산선 144.49km) [44.98km, 4차로 신설]